

□ 공고 제2020-76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정관 일부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0. 10. 07.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정관 제54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정관 일부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정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7조 (하부조직) ①의료원장 하부조직으로 기획실, 공공의료본부, 진료부, 약제팀, 한방부, 교육수련부, 간호부, 관리부를 두며, 자문기구로 지역주민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기획실, 공공의료본부, 진료부, 약제팀, 한방부, 교육수련부, 간호부, 관리부에는 필요에 따라 센터, 과, 팀 또는 실을 두며, 조직구성은 직제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③의료원의 직제는 별표 1과 같다.

제28조 (부장 등) ①공공의료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진료부, 한방부, 교육수련부, 간호부, 관리부에는 부장 각 1인을 둔다.

제27조 제3항의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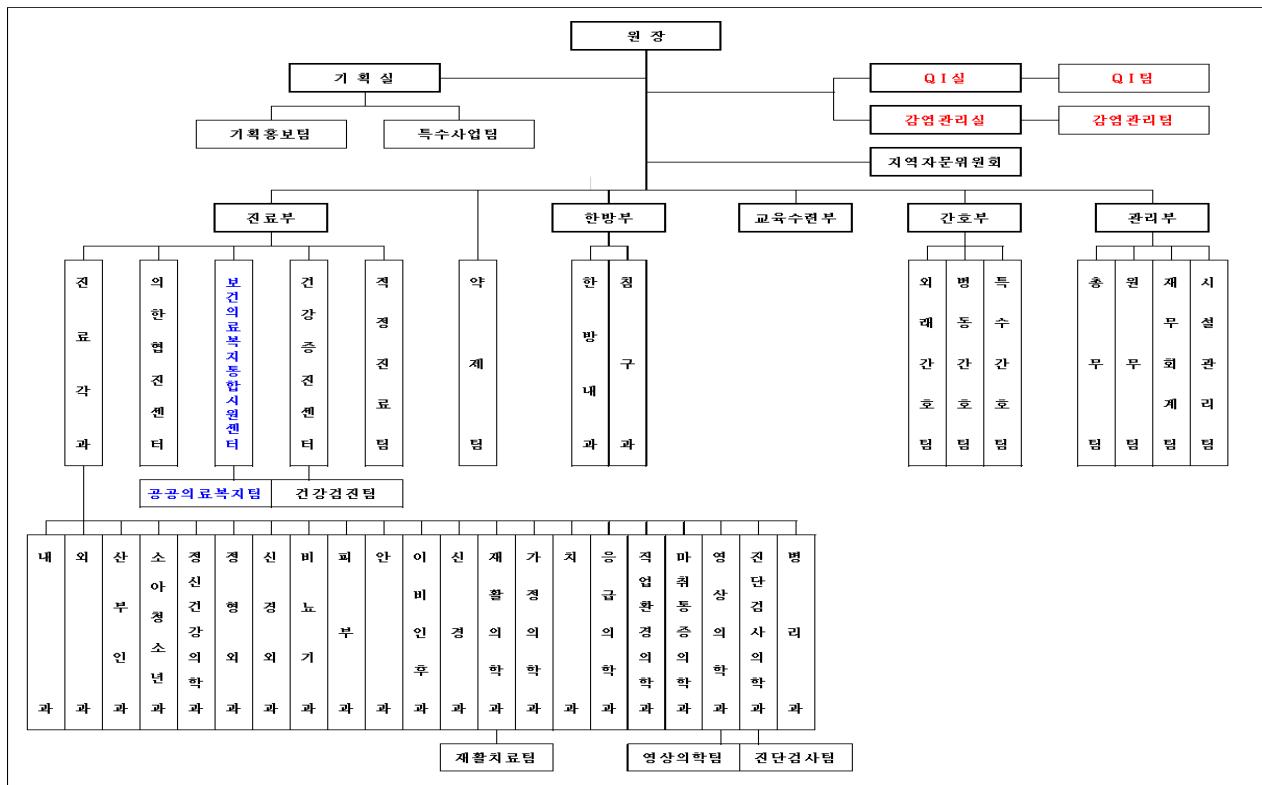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p>제27조 (하부조직) ①의료원장 하부조직으로 기획실, <u>QI실, 감염관리실</u>, 진료부, 약제팀, 한방부, 교육수련부, 간호부, 관리부를 두며, 자문기구로 지역주민자문위원회를 둔다.</p> <p>②제1항의 기획실, <u>QI실, 감염관리실</u>, 진료부, 약제팀, 한방부, 교육수련부, 간호부, 관리부에는 필요에 따라 센터, 과, 팀 또는 실을 두며, 조직구성은 직제규정에서 따로 정한다.</p> <p>③의료원의 직제는 <u>별표 1</u>과 같다</p> <p>제28조 (부장 등) ①진료부, 한방부, 교육수련부, 간호부, 관리부에는 부장 각 1인을 둔다.</p>	<p>제27조 (하부조직) ①의료원장 하부조직으로 기획실, <u>공공의료본부</u>, 진료부, 약제팀, 한방부, 교육수련부, 간호부, 관리부를 두며, 자문기구로 지역주민자문위원회를 둔다.</p> <p>②제1항의 기획실, <u>공공의료본부</u>, 진료부, 약제팀, 한방부, 교육수련부, 간호부, 관리부에는 필요에 따라 센터, 과, 팀 또는 실을 두며, 조직구성은 직제규정에서 따로 정한다.</p> <p>③의료원의 직제는 <u>별표 1</u>과 같다</p> <p>제28조 (부장 등) ①<u>공공의료본부에 본부장을 두고</u>, 진료부, 한방부, 교육수련부, 간호부, 관리부에는 부장 각 1인을 둔다.</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부 칙</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현행)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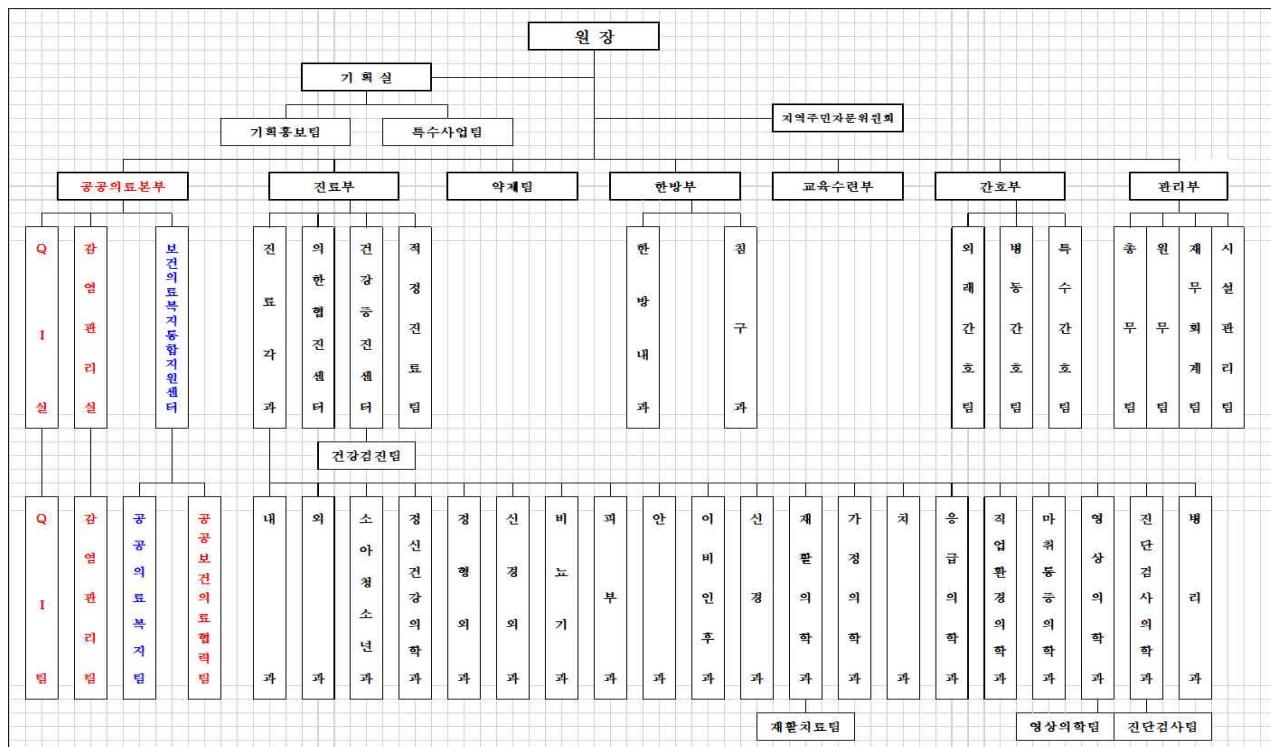
청주의료원기구표



(개정)

[별표 1]

청주의료원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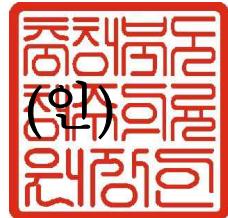


□ 공고 제2020-77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0. 10. 07.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인)



규정 제477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7조 제1항과 제2항 중 “QI실, 감염관리실”을 삭제하고, “공공의료본부”를 신설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의료본부장은 진료부장이 겸임하고, QI실장, 감염관리실장, <중략> 건강증진센터장은 진료과장을 겸직하고, 진료과장은 전문의 또는 한의사로 보한다. 진료부장과 교육수련부장은 의료원 근무 3년 이상인 의사로 보한다.

“제3절 QI실”을 “제3절 공공의료본부”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공공의료본부) ①공공의료본부에는 본부장 1인을 두며, 원장을 보조하여 공공의료본부 소속 각 부서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의 업무를 지휘 · 감독한다.
②공공의료본부에 QI실, 감염관리실,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를 둔다.

“제16조”, “제16조의2”를 “제17조”, “제17조의2”(현행 제16조에서 제16조의2 까지와 같음)로 한다.

“제4절 감염관리실”을 삭제하고, “제17조”, “제17조의2”를 “제18조”, “제18 조의2”(현행 제17조에서 제17조의2까지와 같음)로 한다.

“제5절 진료부”를 “제4절 진료부”로 하고, “제18조”를 “제20조”로 하며, 제18조제2항의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및 제18조제3항의 “공공의료복지 팀”을 삭제한다.

“제19조”를 “제21조”(현행 제19조와 같음)로 하며, “제20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설한다.

제19조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인을 두며, 하부조직으로 공공의료복지팀과 공공보건의료협력팀을 둔다.

제19조의2 (공공의료복지팀) 공공의료복지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 (공공보건의료협력팀) 공공보건의료협력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필수의료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

 가. 원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나. 원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필수의료 협력사업 수행

 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나. 응급질환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3. 지역 진단 및 기초조사

4. 기타 진료과 및 관련기관 연계 및 조정

“제21조”에서 “제27조”를 “제22조”에서 “제28조”(현행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와 같음)로 한다.

“제6절 약제팀”을 “제5절 약제팀”으로, “제28조”를 “제29조”(현행 제28조와 같음)로 한다.

“제7절 한방부”를 “제6절 한방부”로, “제29조”를 “제30조”(현행 제29조와 같음)로 한다.

“제8절 교육수련부”를 “제7절 교육수련부”로, “제30조”를 “제31조”(현행 제30조와 같음)로 한다.

“제9절 간호부”를 “제8절 간호부”로, “제31조”에서 “제34조”를 “제32조”에서 “제35조”(현행 제31조에서 제34조까지와 같음)로 한다.

“제10절 관리부”를 “제9절 관리부”로, “제35조”에서 “제39조”를 “제36조”에서 “제40조”(현행 제35조에서 제39조까지와 같음)로 한다.

제9조(정원) 제1항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p>제7조 (기구) ①의료원에 기획실, <u>QI실</u>, <u>감염관리실</u>, 진료부, 한방부, 교육수련부, 간호부, 관리부, 약제팀을 두고, 자문기구로 지역주민자문위원회를 둔다.</p> <p>② 제1항의 기획실, <u>QI실</u>, <u>감염관리실</u>, 진료부, 한방부, 교육수련부, 간호부, 관리부, 약제팀에는 필요에 따라 센터, 과, 팀 또는 실을 둘 수 있다.</p> <p>제8조 (직위)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QI실장, 감염관리실장, <중략> 건강증진센터장은 진료과장은 겸직하고, 진료과장은 전문의 또는 한의사로 보한다. 진료부장과 교육수련부장은 의료원 근무 3년 이상인 의사로 보한다. ~ 7. (생략) 	<p>제7조 (기구) ①의료원에 기획실, <u>공공의료본부</u>, 진료부, 한방부, 교육수련부, 간호부, 관리부, 약제팀을 두고, 자문기구로 지역주민자문위원회를 둔다.</p> <p>② 제1항의 기획실, <u>공공의료본부</u>, 진료부, 한방부, 교육수련부, 간호부, 관리부, 약제팀에는 필요에 따라 센터, 과, 팀 또는 실을 둘 수 있다.</p> <p>제8조 (직위)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u>공공의료본부장은 진료부장이 겸임하고</u>, QI실장, 감염관리실장, <중략> 건강증진센터장은 진료과장은 겸직하고, 진료과장은 전문의 또는 한의사로 보한다. 진료부장과 교육수련부장은 의료원 근무 3년 이상인 의사로 보한다. ~ 7. (현행과 같음)
<u>제3절 QI실</u>	<u>제3절 공공의료본부</u>
<u>(신설)</u>	<p>제16조 (공공의료본부) ①공공의료본부에는 본부장 1인을 두며, 원장을 보조하여 공공의료본부 소속 각 부서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p> <p>②공공의료본부에 QI실, 감염관리실,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를 둔다.</p>
<u>제16조 ~ 제16조의2 (생략)</u>	<p>제17조 ~ 제17조의2 (현행 제16조에서 제16조의2까지와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삭제)</p>
<u>제4절 감염관리실</u>	<u>제4절 진료부</u>
<u>제17조 ~ 제17조의2 (생략)</u>	<p>제18조 ~ 제18조의2 (현행 제17조에서 제17조의2까지와 같음)</p>
<u>제5절 진료부</u>	
<p>제18조 (진료부) ① (생략)</p> <p>②진료부에 의·한협진센터, <u>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u>, 건강증진센터, <중략> 적정진료팀을 둔다.</p> <p>③제2항의 각 센터 및 진료과의 지원을 위한 <u>공공의료복지팀</u>, 건강검진팀, <중략> 따로 둘 수 있다.</p>	<p>제20조 (진료부) ① (현행과 같음)</p> <p>②진료부에 의·한협진센터, 건강증진센터, <중략> 적정진료팀을 둔다.</p> <p>③제2항의 각 센터 및 진료과의 지원을 위한 건강검진팀, <중략> 따로 둘 수 있다.</p>

현 행	개 정(안)
<p><u>제19조</u> (의 · 한협진센터) (생략)</p> <p><u>제20조</u>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u>보건</u> 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하부조직으로 공공의료복지팀을 둈다.</p> <p>1. ~ 6. (생략) (신설)</p>	<p><u>제21조</u> (현행 제19조와 같음)</p> <p><u>제19조</u>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u>보건</u> 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인을 두며, 하부조직으로 공공의료복지팀과 공공보건의료협력팀을 둈다.</p> <p><u>제19조의2</u> (공공의료복지팀) 공공의료복지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u>제21조</u> ~ <u>제27조</u> (생략)</p> <p><u>제6절 약제팀</u></p>	<p><u>제19조의3</u> (공공보건의료협력팀) 공공보건의료협력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필수의료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 가. 원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나. 원외 협의체 구성 및 운영</p> <p>2. 필수의료 협력사업 수행 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나. 응급질환 이송 · 전원 및 진료협력</p> <p>3. 지역 진단 및 기초조사</p> <p>4. 기타 진료과 및 관련기관 연계 및 조정</p>
<p><u>제28조</u> (생략)</p> <p><u>제7절 한방부</u></p>	<p><u>제22조</u> ~ <u>제28조</u> (현행 제21조부터 제27조 까지와 같음)</p> <p><u>제5절 약제팀</u></p>
<p><u>제29조</u> (생략)</p> <p><u>제8절 교육수련부</u></p>	<p><u>제29조</u> (현행 제28조와 같음)</p> <p><u>제6절 한방부</u></p>
<p><u>제30조</u> (생략)</p> <p><u>제9절 간호부</u></p>	<p><u>제30조</u> (현행 제29조와 같음)</p> <p><u>제7절 교육수련부</u></p>
<p><u>제31조</u> ~ <u>제34조</u> (생략)</p> <p><u>제10절 관리부</u></p>	<p><u>제31조</u> (현행 제30조와 같음)</p> <p><u>제8절 간호부</u></p> <p><u>제32조</u> ~ <u>제35조</u> (현행 제31조부터 제34조 까지와 같음)</p> <p><u>제9절 관리부</u></p> <p><u>제36조</u> ~ <u>제40조</u> (현행 제35조부터 제39조 까지와 같음)</p> <p>부 칙</p> <p>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현행)

[별표 1]

정 원 표

직 군	직 렬	직 종	직 급	제	임 원	계 약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계	594	1	67	6	41	105	195	179		
		소 계		1	1							
		원 장		1	1							
의 료		소 계	522		66	4	35	90	168	159		
		의무직	52		52							
		의 사	46		46							
		치 과 의	4		4							
		한 의 사	2		2							
		약무직(약사/한약사)	14		14							
		간호직(간호사)	278			2	28	62	107	79		
		의료기술직	91			2	7	20	40	22		
		임 상 병 리 사	20									
		방 사 선 사	17									
		물리 치 료 사	17									
		작업 치 료 사	7									
		치 과 위 생 사	7									
일 반		사회 복 지 사	6									
		정신 보건 임 상 치 료 사	1									
		응 급 구 조 사	4									
		산업 위 생 기 사	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									
		영 양 사	5									
		간호조무직(간호조무사)	87					8	21	58		
		소 계	71		1	2	6	15	27	20		
		관 리	45		1	2	6	12	18	6		
		행 정	35									
일 반		전 기 기 사										
		열 관 리 사										
		환경 기 사										
		건축 기 사										
		산업안전기사										
		의 공 기 사										
		소 방 기 사										
		기 능	26					3	9	14		
		운 전 사	1									
		조 리 사	1									
		사 무 원	14									
		장례 지 도 사	8									
		기 계 원	2									

※ 공중보건의사는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

(개정)

[별표 1]

정 원 표

직군	직렬	직종	직급	계	임원	계약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595	1	68	6	41	105	195	179		
		소 계	1	1								
		원 장	1	1								
의 료		소 계	523		67	4	35	90	168	159		
		의무직	53		53							
		의 사	46		46							
		치 과 의	5		5							
		한 의 사	2		2							
		약무직(약사/한약사)	14		14							
		간호직(간호사)	278			2	28	62	107	79		
		의료기술직	91			2	7	20	40	22		
		임상병리사	20									
		방사선사	17									
		물리치료사	16									
		작업치료사	7									
		치과위생사	7									
		사회복지사	7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									
일 반		응급구조사	4									
		산업위생기사	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									
		영양사	5									
		간호조무직(간호조무사)	87					8	21	58		
		소 계	71		1	2	6	15	27	20		
		관리	45		1	2	6	12	18	6		
		행정	35									
		전기기사										
		열관리사										
기 능		환경기사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의공기사										
		소방기사										
기 능		기능	26					3	9	14		
		운전사	1									
		조리사	1									
		사무원	14									
		장례지도사	8									
기 계 원		기계원	2									

※ 공중보건의사는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

□ 공고 제2020-78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0. 10. 07.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규정 제478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부서라 함은 기획실의 기획홍보팀, 특수사업팀, 공공의료본부의 QI팀, 감염관리팀, 공공의료복지팀, 공공보건의료협력팀, 진료부의 진료 각 과와 건강검진팀, 적정진료팀, 재활치료팀, 영상의학팀, 진단검사팀, 약제팀, 한방부의 진료 각 과, 간호부의 외래간호팀, 병동간호팀, 특수간호팀 및 관리부의 총무팀, 원무팀, 재무회계팀, 시설관리팀을 말한다.

제51조(징계대상) ①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충청북도 지사가 징계토록 요구하는 경우, 원장은 별표4, 별표4-2, 별표4-3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한다.

제56조(징계의결) ②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경우에는 제51조 제1항 별표4, 별표4-2, 별표4-3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p>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14. (생략)</p> <p>15. 부서라 함은 기획실의 기획홍보팀, 특수사업팀, <u>진료부의 진료 각 과와 적정진료팀, 건강검진팀, 공공의료복지팀, 공공보건의료협력팀, 재활치료팀, 영상의학팀, 진단검사팀, 한방부의 진료 각과, 약제팀, 간호부의 외래간호팀, 병동간호팀, 특수간호팀 및 관리부의 총무팀, 원무팀, 재무회계팀, 시설관리팀</u>을 말한다.</p>	<p>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14. (생략)</p> <p>15. 부서라 함은 기획실의 기획홍보팀, 특수사업팀, <u>공공의료본부의 QI팀, 감염관리팀, 공공의료복지팀, 공공보건의료협력팀, 진료부의 진료 각 과와 건강검진팀, 적정진료팀, 재활치료팀, 영상의학팀, 진단검사팀, 약제팀, 한방부의 진료 각과, 간호부의 외래간호팀, 병동간호팀, 특수간호팀 및 관리부의 총무팀, 원무팀, 재무회계팀, 시설관리팀</u>을 말한다.</p>
<p>제51조(징계대상)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충청북도지사가 징계토록 요구하는 경우, 원장은 <u>별표4 및 별표4-2의 징계양정기준</u>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한다.</p>	<p>제51조(징계대상)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충청북도지사가 징계토록 요구하는 경우, 원장은 <u>별표4, 별표4-2, 별표4-3의 징계양정기준</u>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한다.</p>
<p>제56조(징계의결) ① (생략)</p> <p>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경우에는 제51조 제1항 <u>별표4 및 별표4-2의 징계양정기준</u>에 따라 징계량을 결정하여야 한다.</p>	<p>제56조(징계의결) ① (현행과 같음)</p> <p>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경우에는 제51조 제1항 <u>별표4, 별표4-2, 별표4-3의 징계양정기준</u>에 따라 징계량을 결정하여야 한다.</p>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형별	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감봉~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정직	

(개정)

[별표 4-2]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형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 인 경우	감봉~견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정직	

(신설)

[별표 4-3]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¹⁾	경과실 주의·경고	고의·중과실 경징계	중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주의·경고	고의·중과실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²⁾ 미준수	절차 미준수 경징계	주요절차 ³⁾ 미준수 중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⁴⁾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 정규직 전환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⁵⁾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 ⁶⁾ 의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1)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2)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3)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회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4)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5)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6)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 공고 제2020-79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자산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0. 10. 07.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규정 제479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자산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자산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6조 (자산관리자) 제4항의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표 2]

부서별 자산운용 담당 및 소관자산 (제6조 제4항 관련)

부 서 별	자산운용 담당		소관자산
	정	부	
원 장 실	총 무 팀 장	담 당 자	원장실 소관자산
기획실장실	기획실장	담 당 자	기획실장실 소관자산
관리부장실	관리부장	담 당 자	관리부장 소관자산
간호부장실	간호부장	간호팀장	간호부장 소관자산
진료각과	임상과장	담당자	과전체 자산 및 소관의료기기
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장	진단검사팀장	"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장	영상의학팀장	"
중환자실	중환자실장	수간호사	실전체자산 및 소관의료기기
응급실	응급실장	"	"
수술실	마취과장	"	"
내시경실	내과과장	담당자	
중앙공급실	간호부장	간호팀장	"
주사실	간호부장	간호사	"
기획홍보팀	기획홍보팀장	담당자	팀전체자산(전산실 포함)
총무팀	총무팀장	담당자	팀전체자산 (경비실, 원목실 포함)
재무회계팀	재무회계팀장	담당자	팀전체자산
원무팀	원무팀장	담당자	팀전체자산(당직실 포함)
적정진료팀	적정진료팀장	담당자	팀전체자산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장	담당자	" (기계실, 전기실, 차량, 폐수처리장, 통신실 포함)
약제팀	약제팀장	담당자	팀전체자산 (약제창고, 탕전실 포함)
각병동	수간호사	담당간호사	간호사실, 병실전체자산 및 소관의료기기
식당	영양실장	담당자	식당내 소관자산
장례식장	특수사업팀장	담당자	장례식장 소관자산
판사	시설관리팀장	담당자	판사시설자산
물리치료실	재활치료팀장	담당자	실전체자산 및 소관의료기기
건강검진팀	건강검진팀장	담당자	"
공공의료복지팀	공공의료복지팀장	담당자	팀전체자산
노조사무실	노조지부장	노조사무장	실전체자산

(개정)

[별표 2]

부서별 자산운용 담당 및 소관자산 (제6조 제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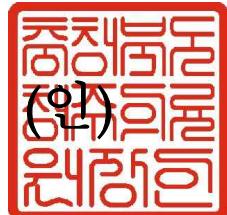
부 서 별	자산운용 담당		소관자산
	정	부	
원 장 실	총 무 팀 장	담당자	원장실 소관자산
기획실장실	기획실장	담당자	기획실장실 소관자산
관리부장실	관리부장	담당자	관리부장 소관자산
간호부장실	간호부장	간호팀장	간호부장 소관자산
진료각과	임상과장	담당자	과전체 자산 및 소관의료기기
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장	진단검사팀장	"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장	영상의학팀장	"
중환자실	중환자실장	수간호사	실전체자산 및 소관의료기기
응급실	응급실장	"	"
수술실	마취과장	"	"
내시경실	내과과장	담당자	
중앙공급실	간호부장	간호팀장	"
주사실	간호부장	간호사	"
기획홍보팀	기획홍보팀장	담당자	팀전체자산(전산실 포함)
총무팀	총무팀장	담당자	팀전체자산 (경비실, 원목실 포함)
재무회계팀	재무회계팀장	담당자	팀전체자산
원무팀	원무팀장	담당자	팀전체자산(당직실 포함)
적정진료팀	적정진료팀장	담당자	팀전체자산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장	담당자	" (기계실, 전기실, 차량, 폐수처리장, 통신실 포함)
약제팀	약제팀장	담당자	팀전체자산 (약제창고, 당전실 포함)
각병동	수간호사	담당간호사	간호사실, 병실전체자산 및 소관의료기기
식당	영양실장	담당자	식당내 소관자산
장례식장	특수사업팀장	담당자	장례식장 소관자산
관사	시설관리팀장	담당자	관사시설자산
물리치료실	재활치료팀장	담당자	실전체자산 및 소관의료기기
건강검진팀	건강검진팀장	담당자	"
공공의료복지팀	공공의료복지팀장	담당자	팀전체자산
공공보건의료협력팀	공공보건의료협력팀장	담당자	"
Q I 팀	Q I 팀장	담당자	"
감염관리팀	감염관리팀장	담당자	"
노조사무실	노조지부장	노조사무장	실전체자산

□ 공고 제2020-80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환자급식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0. 10. 07.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규정 제480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환자급식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환자급식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영양사로 한다.

제18조(식기소독) ②소독상이 필요한 감염병 환자용 식기는 일반환자의 식기와 구분하여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며, 매 식사 후 식기는 병실 내 격리의료폐기물 통에 폐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p>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u>연 2회 개최</u>하며, 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p> <p>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u>간사는 식당에 근무하는 영양사로 한다.</u></p> <p>② (생략)</p> <p>제18조(식기소독) ① “생략”</p> <p>② <u>감염병 환자용 식기는 일반환자의 식기와 구분하여 일회용 그릇을 사용하며, 매 식사 후 소독하여야 한다.</u></p>	<p>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u>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고</u>,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p> <p>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u>간사는 영양사로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식기소독)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소독상이 필요한 감염병 환자용 식기는 일반환자의 식기와 구분하여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며, 매 식사 후 식기는 병실 내 격리의료폐기물 통에 폐기한다.</u></p>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